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49

발의연월일: 2020. 9. 16.

발 의 자:도종환·강병원·고영인

김철민 · 신동근 · 오영훈

유정주 • 이규민 • 이용빈

조승래 · 진선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시설에는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법」에 따른 도 서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문화시설은 현행법에 근거하여 문화 예술진흥기금의 사용, 국고보조 등의 각종 지원을 받고 있음.

그런데, 문학관의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도서관법」 등에 따라 이 법의 문화시설로 적용을 받아 왔는데, 2016년에 「문학 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문화시설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다시 명시적으로 포함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시설의 범위에 「문학진흥법」에 따른 문학관을 신설함으로써 현행법에 따른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3호라목 신설).

법률 제 호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①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	3
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u><신 설></u>	라. 「문학진흥법」 제2조제5
	호에 따른 문학관
<u>라.</u> ~ <u>바.</u> (생 략)	<u>마.</u> ~ <u>사.</u> (현행 라목부터
	바목까지와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